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426 제출연월일: 2024. 12. 1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어장정화·정비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어장정화·정비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"휴업·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"을 "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재개업(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하려면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7조(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	제17조(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		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	②		
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ㆍ정			
비업을 <u>휴업 • 재개업 또는 폐업</u>	<u>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</u>		
<u>하려면</u>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	<u>하거나 재개업(30일 이상 휴업</u>		
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	후 재개업하는 경우로 한정한		
신고하여야 한다.	다)하려면		